

의안번호	2218272
의 퇴 인	조은희의원
회 답 일	2026. 4. 28.
추계번호	26C2163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18조의3(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)	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장기근속 경력이 있는 아이돌봄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기준은 아이돌봄사의 근속기간과 근속기간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함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그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18조의3(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 도입(안 제18조의3)

- 개정안은 장기근속수당 지급 주체로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나, 최근 법개정(2026. 4. 7.)에 따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가 아이돌보미가

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에서, 본 추계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정기관이 장기근속 수당의 지급주체가 되는 것으로 가정함

- 장기근속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관련 기준을 아이돌봄사의 근속기간과 근속기간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 및 금액 등을 현시점에서 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, 장기근속수당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한편, 개정안에서 아이돌봄사 심리상담·치료 지원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업무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정기관의 업무로서 법 제13조제7항에서 서비스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,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